

『神學思想』 2016년 봄호(172집)에 게재논문

한일간 과거사 인식과 국가 범죄행위에 대한 책임의 문제

최형묵(천안실림교회 목사 · 한신대 초빙교수 / 기독교윤리학)

초록

2015년 12월 28일 한국과 일본의 외교장관은 회담을 열고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최종적 · 불가역적’ 해결을 선언하는 합의사항을 발표하였다. 그러나 그 합의사항은 기본적으로 피해자의 입장이 반영되어 있지 않을 뿐 아니라, 인도에 반하는 범죄행위에 대한 국제적 규범에 부합하지 않는다.

이 글은 그 합의와 관련된 문제의 상황을 직시하면서 과거 제국주의 국가의 식민지 지배와 전쟁으로 인한 범죄행위에 대해 어떤 해결책이 가능한지 모색한다. 이 글은 먼저 한일간의 과거사 인식의 문제를 다루는 한편, 일찍이 독일의 전후 책임의 문제를 ‘죄의 문제’로 깊이 있게 다룬 카를 야스퍼스(Karl Jaspers)의 입장을 참고하면서 제국주의 국가의 반인도적 범죄행위에 대해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지를 다룬다.

주제어

과거사, 인권, 정의, 인도에 반하는 죄, 일본군 ‘위안부’, 한일관계

1. 반인도적 국가 범죄행위가 외교적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있는가?

2015년 12월 28일 한국과 일본의 외교장관은 회담을 열고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최종적 · 불가역적’ 해결을 선언하는 합의사항을 발표하였다.¹⁾ 전후 70년을 맞이하여 상징

* 이 글은 2015년 2월 11일 일본 교토(京都) 라쿠난(洛南)교회에서 일본크리스찬아카데미 간사이세미나하우스와 일본기독교단 교토교구가 공동주최한 ‘슈가쿠인(修学院)포럼’ 제4회 강연문 “日韓関係の障壁とその打開に向けて”, 그리고 2015년 12월 6일 교토 라쿠요(洛陽)교회에서 일본기독교단 교토교구 전후보상을요구하는연락회 · 선교부가 공동주최한 ‘전후보상을요구하는집회’ 강연문 “戦後 70年 - 戰後補償のゆくえ”를 기초로, 2015년 12월 28일 한일 외교장관 회담 상황을 반영하여 재구성 보완한 것이다.

1) 한국의 윤병세 외교부 장관과 일본의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외무상은 2015년 12월 28일 오후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한일 외교장관 회담을 연 후 발표한 <한일 외교장관회담 공동기자회견문>(전문)은 다음과 같다.

1. 일본측 표명사항

일한간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양국 국장급 협의 등을 통해 집중적으로 협의해왔음. 그 결과에 기초하여 일본정부로서 이하를 표명함.

1) 위안부 문제는 당시 군의 관여 하에 다수의 여성의 명예와 존엄에 깊은 상처를 입힌 문제로서, 이러한 관점에서 일본정부는 책임을 통감함. 아베 내각총리대신은 일본국 내각총리대신으로서 다시 한 번 위안부로서 많은 고통을 겪고 심신에 걸쳐 치유하기 어려운 상처를 입은 모든 분들에 대해 마음으로부터 사죄와 반성의 마음을 표명함.

적인 의미를 지니는 그 해를 넘기기 전 한일 간의 예민한 갈등 상황을 해소하려 한 양국 당국자들의 노력의 결과라 볼 수 있지만, 그 합의가 명시한 바와 같이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최종적·불가역적’ 해결이 이뤄진 것은 결코 아니다.

무엇보다 피해자가 엄존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피해 당사자의 입장이 전혀 반영되지 않아 그 합의가 최종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 그 합의에 범죄행위의 주체, 그리고 그에 대한 반성과 책임의 문제가 언급되기는 하였지만, 문제 해결을 위한 자금의 성격을 분명히 하지 않음으로써 반성과 책임의 성격이 모호해져버렸다. 게다가 일본의 총리가 사죄와 반성의 마음을 표한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해 별도의 총리 자신의 직접적인 표명 기회가 없어 그 전언의 진정성을 확인할 수 없게 되었다. 또한 합의 이후 양국 당국자들의 엇갈리는 발언과 태도를 보더라도 과연 무엇이 어떻게 해결된 것인지 충분히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결국 이 합의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최종적·불가역적’ 해결이라는 선언 외에 사실상 알맹이 없는 외교적 타협에 지나지 않은 것이 되었다. 일본 정부의 입장에서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더 이상 국제사회에서 거론되지 않기를 바라는 만큼 ‘최종적·불가역적’ 해결이라 못 박고 싶어 했겠지만, 국민적 동의를 얻어낼 수 있는 명분도 실리도 없는 합의를 수용한 한국 정부의 입장이 의아해진다. 이번에 황급히 이뤄진 외교적 합의의 배경에는 한미일 동맹관계를 중심으로 동아시아 질서를 구축하는 데서 한일간의 갈등을 시급히 해결하고자 하는 미국의 전략적 의도가 개입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1945년 도쿄재판에서, 1952년 샌프란시스코조약에서 청산되었어야 할 식민지 지배와 전쟁 범죄는 미국주도의 국제적 역학구도 안에서 무마되었다. 적어도 한일간의 관계 차원에 한정한다면 1965년 한일 외교정상화 과정에서 해결되었어야 했지만, 그 기회에서마저도 일제의 식민지 지배와 전쟁 범죄 문제는 명확하게 해결되지 않았다. 지금 동아시아에서는 그 역사가 되풀이되고 있다. 한일 외교장관의 합의는 과거사의 잘못을 철저하게 청산하지 못한 역사를 되풀이하고 있는 또 하나의 명징한 사례가 되고 있다.

이 글은 이와 같은 문제의 상황을 직시하면서 과거 제국주의 국가의 식민지 지배와 전쟁으로 인한 범죄행위에 대해 어떤 해결책이 가능한지 모색하고자 한다. 한국의 상황에서 볼

-
- 2) 일본정부는 지금까지도 본 문제에 진지하게 임해 왔으며, 그러한 경험에 기초하여 이번에 일본정부의 예산에 의해 모든 전(前) 위안부 분들의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는 조치를 강구함. 구체적으로는, 한국정부가 전(前) 위안부 분들의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재단을 설립하고, 이에 일본정부 예산으로 자금을 일괄 거출하고, 일한 양국 정부가 협력하여 모든 전(前) 위안부 분들의 명예와 존엄의 회복 및 마음의 상처 치유를 위한 사업을 행하기로 함.
 - 3) 일본정부는 상기를 표명함과 함께, 상기 2)의 조치를 착실히 실시한다는 것을 전제로, 이번 발표를 통해 동 문제가 최종적 및 불가역적으로 해결될 것임을 확인함. 또한, 일본정부는 한국정부와 함께 향후 유엔 등 국제사회에서 동 문제에 대해 상호 비난·비판하는 것을 자제함.

2. 한국측 표명사항

한일간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양국 국장급협의 등을 통해 집중적으로 협의를 해왔음. 그 결과에 기초하여 한국정부로서 이하를 표명함.

- 1) 한국정부는 일본정부의 표명과 이번 발표에 이르기까지의 조치를 평가하고, 일본정부가 상기 1.2)에서 표명한 조치를 착실히 실시한다는 것을 전제로 이번 발표를 통해 일본 정부와 함께 이 문제가 최종적 및 불가역적으로 해결될 것임을 확인함. 한국정부는 일본정부가 실시하는 조치에 협력함.
- 2) 한국정부는 일본정부가 주한일본대사관 앞의 소녀상에 대해 공관의 안녕·위엄의 유지라는 관점에서 우려하고 있는 점을 인지하고, 한국정부로서도 가능한 대응방향에 대해 관련단체와의 협의 등을 통해 적절히 해결되도록 노력함.
- 3) 한국정부는 이번에 일본정부가 표명한 조치가 착실히 실시된다는 것을 전제로 일본정부와 함께 향후 유엔 등 국제사회에서 동 문제에 대해 상호 비난·비판을 자제함.

때 식민지 지배와 전쟁 책임의 문제는 명확하게 일본 제국주의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 그 문제가 여전히 한일간에 해소되지 않은 쟁점으로 남아 있다. 그러기에 이 글은 먼저 한일간의 과거사 인식의 문제를 먼저 다루려고 한다. 그것은 과거 제국주의 국가의 식민지 지배와 전쟁의 범죄가 우리 사회에서 문제되는 맥락을 분명히 인식하고자 함이다. 그러나 식민지 지배와 전쟁의 범죄행위는 민족주의의 맥락에서 한정될 수 없는 반인도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이 글은 보편적 맥락에서 반인도적 범죄행위를 다루고 그 해결책을 모색하고자 한다. 여기서 일찍이 독일의 전후 책임의 문제를 ‘죄의 문제’로 짚어 있게 다룬 카를 야스퍼스(Karl Jaspers)의 입장을 중요하게 참고하면 논의를 전개할 것이다. 그리고 피해 당사자들의 피해 회복 문제를 다룬 후 이에 관한 성서적 통찰을 확인하면서 결론을 내리려고 한다.

2. 한일관계와 과거사의 인식

한일 양국 정부가 굳이 상징적 의미를 유념하며 현안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2015년은 1945년 해방·종전으로부터 70주년, 1910년 한일강제병합에 앞서 사실상 일제의 한국강점기점이 되는 1905년 을사조약²⁾으로부터 110주년, 그리고 한일협정체결 50주년이 되는 해였다. 한일 양국 정부가 해를 넘기기 직전 연말에 양국 현안에 대한 극적 타결을 선언한 것은 재삼 그 의미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바로 그 해에 양국간 중대한 갈등 사안을 해결하였다는 것을 드러내고자 하는 의도를 지녔을 것이다.

진정한 의미에서 문제가 해결되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다. 오히려 양국간의 역사인식의 차이를 좁히고 한동안 수렴의 방향으로 진전된 역사인식에 미치지 못하는 해법이 제시됨으로써 문제가 더 꼬이고 말았다. 불행하게도 그것은 과거사의 잘못을 철저하게 청산하지 못한 동아시아의 현상을 재확인하는 또 하나의 계기가 되고 말았다. 1945년 도쿄재판, 1952년 샌프란시스코조약은 일본 제국주의 국가의 범죄 행위에 대해 책임을 묻고 잘못된 과거를 청산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였지만, 널리 알려진 바와 같이 미국의 동아시아 전략 구도 가운데서 그 책임은 상당부분 면책되었고 따라서 과거사의 범죄행위는 무마되었다. 일본 제국주의 국가의 식민지 지배와 전쟁의 범죄행위가 국제적 차원에서 충분히 문책되지 않은 상황 가운데서 한일간 외교정상화가 시도되었을 때 그 문제는 한일간의 문제로 재삼 부상하지 않을 수 없었다.

한일협정의 체결은 일본 제국주의에 의한 식민지 지배와 전쟁의 불행한 역사를 마감하고 우호와 협력의 한일관계를 형성하는 것을 뜻했다. 하지만 양국간의 국교정상화 과정은 순탄하지 않았다. 1951년 한일예비회담이 시작된 이래 14년간의 마라톤 회의 끝에 협정이 체결될 정도로 양국간의 정상 회복은 순탄하지 않았다. 그 과정이 순탄하지 않았던 것은 역시 과거사 문제 때문이었다. 양국은 모두 국내의 반대의견³⁾에 부딪히는 가운데 협정을 일단락 지을 수 있었다. 그렇게 국교정상화가 이뤄졌지만 과거사 문제는 갈등의 잠복 요인으로 자

2) 이토 히로부미(伊藤博文)에 의해 주도되어 한국의 외교권을 박탈한 이 조약은 공정한 조약일 수 없다는 점에서 ‘을사늑약(乙巳勒約)’이라 불리기도 한다.

3) 한국에서의 반대운동은 외세의존적 경제개발을 추진하려는 군사정부에 저항하면서 자립적 근대화를 지향하는 입장에서 제기되었고, 일본에서 반대운동은 안보투쟁의 연장선상에서 한미일 군사협력체제 형성에 대한 우려와 일본의 독점자본이 한국이 진출하면서 일본에 저임금구조가 정착될 수 있다는 우려의 입장에서 제기되었다. 정재정, 『주제와 쟁점으로 읽는 한일관계사』(서울: 역사비평사, 2014), 98-107 참조.

리하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교정상화 아래 한일양국은 매우 긴밀한 관계 속에서 협력과 교류를 발전시켜왔다.

양국간의 불균등한 발전의 상황 가운데서 지속되었던 긴장관계는 한국의 경제발전과 민주화 이후 상당부분 해소되고 양국은 대등한 협력관계를 형성해가고 있는 것으로 점차 인식되었다. 긴장관계를 야기하는 근본원인에 해당하는 과거사 문제에 대한 인식에서도 양국은 점차 수렴의 방향으로 나아가고, 우호적 협력관계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었다. 고노(河野洋平) 담화(1993)⁴⁾와 무라야마(村山富市) 담화(1995)⁵⁾, 그리고 김대중(金大中)·오부치(小淵惠三)의 21세기를 향한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1998)⁶⁾, 간(管直人) 담화(2010)⁷⁾는 그 진전의 증거였다. 민간 차원의 교류는 더욱 활발해졌다. 한국에서는 1990년대 아래 젊은이들 가운데 일본의 대중문화를 수용하는 저변이 확대되었을 뿐 아니라 일본에서도 한류의 열기가 지속되었다. 그렇게 양국간에 비교적 균등한 관계가 형성되고 교류가 활발히 이뤄진 만큼 양국간 갈등의 근본원인인 과거사 문제도 전향적으로 극복될 수 있으리라는 기대감도 생겼다.

그러나 한국에서 2008년 이후 보수정권이 재등장하여 연이어 집권하고(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 일본에서도 보수적인 아베(安倍晋三) 정권이 재등장하면서 양국관계는 극도로 악화되는 양상으로 치달았다. 양국 정부가 대립하는 가운데 민간차원의 감정도 악화되었다. 한동안 꾸준히 상승하던 양국민 사이의 우호감은 근래에 이르러 현저히 하락하였고, 불신감이 고조되었다.⁸⁾ 양국 사이에는 야스쿠니신사(靖國神社) 참배, 일본군 ‘위안부’, 역사교과서 기술, 독도 영유권에 대한 견해차이로 계속 긴장 상태를 유지해 왔다. 또 다른 한편 중국의 부상에 대응한 미국의 전략과 맞물려 진행되고 있는 일본의 집단자위권 확보 시도와 그에 동반한 평화헌법 개정의 시도 및 안보법제의 제정 등으로 긴장을 더해 가고 있다.

2015년 8월 전후 70주년에 즈음한 아베 총리의 담화가 관심을 끌었고, 또한 지난 11월 수 년만에 한일정상회담이 이뤄지고 12월 외교장관의 합의가 발표되었지만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과거의 역사에 대한 책임의 문제는 여전히 미결의 숙제로 남아 있는 상태이다. 여기서 먼저 2015년 12월 28일 한일 외교장관회담의 합의의 성격을 사실상 규정하고 있는 아베 총리의 담화가 지니는 문제를 검토하고, 이어 과거사의 문제를 정면으로 마주하여 책임지기 위해서는 어떤 태도가 요구되는지 생각해보려고 한다.

3. 아베 총리의 종전 70주년 담화에 담긴 역사인식

-
- 4) 그 내용은, ‘위안부’ 모집과 이송·생활, 위안소의 설치 운영과 관리 등에 일본군이 관여하고 강제성을 띠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었다.
 - 5) 그 내용은, 일본이 잘못된 국책으로 전쟁의 길로 나아가 국민을 존망의 위기에 빠트렸고, 식민지 지배와 침략으로 많은 나라들에 막대한 손해와 고통을 주었다는 것이다.
 - 6) 이 선언에서 오부치 게이조(小淵惠三) 수상은, 한국을 특정하여 식민지 지배를 통해 막대한 손해와 고통을 주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사과했다.
 - 7) 한일 강제병합 100주년을 기해 간 나오토(管直人) 수상은, 한국인의 뜻에 반한 식민지 지배로 깊은 상처를 안겼다는 것을 인정하고 사죄하였다.
 - 8) 2014년 12월 일본 내각부가 발표한 ‘외교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 ‘한국에 친밀감을 느끼지 않는다’는 응답이 66.4%로 역대 최고 수치를 기록하였다. 1999년 이후 ‘친밀감을 느낀다’는 응답비율이 ‘친밀감을 느끼지 않는다’는 응답비율보다 높았지만, 2012년을 기점으로 역전되었고 지난해에 최고치를 기록한 것이다. 『한겨레신문』 2014. 12. 22. 참조.

아베 총리의 담화는 발표되기 이전부터 관심의 대상이 되어 왔다. 기본적으로 그 관심은 전후 70주년이 갖는 무게감에서 비롯되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 아베 총리의 담화에 대한 관심은 이른바 수정주의적 역사 이해에 근거하여 근래 일본 정부의 담화내용을 크게 수정할지도 모른다는 우려와도 깊이 관련되어 있었다.

이미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1993년 고노(河野洋平) 담화, 1995년 무라야마(村山富市) 담화, 1998년 김대중(金大中)·오부치(小淵惠三)의 공동선언, 그리고 2010년 간(管直人) 담화는 식민지 지배와 전쟁과 관련하여 그 주체와 책임, 그리고 피해의 대상을 분명히 하는 역사인식의 발전과정을 보여 주었다. 그런 만큼 그 일련의 담화들은 주변국들로부터 환영을 받았고, 동아시아지역의 평화체제 확립을 위한 역사 인식의 기틀을 보여주는 것으로 인정되어 왔다. 아베 총리가 그 담화의 내용들을 수정하겠다고 했을 때 우려가 제기된 것은 당연한 것이었다.

그런데 지난 2015년 8월 14일 발표된 아베 총리의 담화는 언뜻 보기에도 일단 기왕의 담화 내용들을 수정하지 않은 것으로 보였다. 침략과 전쟁, 식민지 지배, 그리고 반성과 사죄의 개념들을 적절히 배치하고 있을 뿐 아니라 역대 내각의 입장에 변함이 없음을 분명히 하였기 때문이다. 또한 한일간의 주요 현안이 되고 있고 나아가 국제적으로도 중요한 관심사가 되어 있는 일본군 ‘위안부’와 관련하여 “전쟁 중 많은 여성들의 존엄과 명예가 깊은 상처를 입은” 사실도 반복하여 언급하였다. 아베의 담화가 구사하고 있는 표면상의 언어들을 볼 것 같으면 담화 자체가 표방하고 있듯이 기왕의 일본 정부의 입장은 수정하지 않은 것처럼 보였다. 그것은 아마도 아베 총리가 사전에 제기된 여러 우려의 목소리를 귀담아들은 데서 비롯된 결과였을 것이다.

그러나 그 표면상의 언어에도 불구하고 장황한 아베 담화의 논리구조를 들여다볼 것 같으면, 과연 식민지 지배와 전쟁의 책임을 통감하고 있는 것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그 문제는 크게 두 가지 차원에서 지적될 수 있다. 첫 번째는 역사 인식의 차원이고, 두 번째는 과거 역사에서 비롯되는 현실에 대한 책임의 차원이다.

러일 전쟁이 식민지 지배하에 있던 많은 아시아와 아프리카 사람들을 고무시켰다는 주장은 한국인의 입장에서는 아연실색할 수밖에 없는 내용이었다. 바로 그 전쟁의 결과 한국은 식민지로 전락하였기 때문이다. 그 엄연한 역사적 인과관계를 무시한 채 마치 일본이 서구 백인의 세계로부터 유색인의 세계를 지켜낸 것처럼 주장하는 것은 인종주의적 환상에 기댄 시대착오적인 인식의 발로에 지나지 않는다. 담화의 초반 문맥을 보면, 그 때까지는 좋았으나 만주사변과 국제연맹의 탈퇴 등으로 국제사회의 도전자가 되어버린 그 시점부터 일본이 잘못된 길로 접어들었다는 인식이 노골적으로 드러나 있다. 이것은 전쟁의 시기만을 문제 삼고 있을 뿐 식민지 지배에 대해서는 아랑곳하지 않는 역사인식을 드러내고 있다는 점에서 식민지 시기의 고통을 고스란히 기억하고 있는 이들에게 전혀 공감을 얻을 수 없는 것이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역사인식은 이 담화의 저변동기를 드러내고 있다는 점에서, 반성과 사죄의 언어가 정말 진정성이 있는지 충분히 의심할 만한 근거가 되고 있다.

다음으로 아베의 담화는 반성과 사죄의 개념을 반복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책임적 주체를 분명하게 적시하지 않았다. 과거 한 때 불행한 일이 있었지만 앞으로는 그런 불행한 일이 없어야겠다고 말하는 것일 뿐, 누가 누구에게 어떻게 피해를 줬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누가 어떻게 해야겠다는 입장의 천명은 없었다. 이러한 논법에서 불철저한 전후 처리와 함께 지속되어 온 이른바 ‘무책임의 구조’⁹⁾를 떠올리게 되는 것은 단순한 기시감(既視

9) 이는 전후 일본사회를 비판적으로 평가하는 일본의 많은 논자들이 제기하고 있는 것이다. 타나카 히로시(田中

感, Déjà Vu)은 아니다. 역대 내각의 입장에 변함이 없다는 사실을 밝힘으로써 일본 정부의 책임을 암시하고 있는 듯 하기는 하지만, 정작 이 담화를 발표하는 아베 정부의 책임 있는 입장 표명은 없었다. 바로 그 점에서 현재의 아베 정부가 과거 식민지 지배와 전쟁에서 비롯되는 문제들을 책임 있게 마주하려고 하는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

아베의 담화는 말로는 반성과 사죄를 표명하고 있지만 그것으로 수정주의적 역사관을 교묘하게 위장하고 있을 뿐이다. 결국 그 담화를 통해 아베 총리는 자신의 평소 주장을 매우 철묘하게 펼치고 있을 뿐 식민지와 전쟁의 피해 당사자에게는 정작 아무런 책임 있는 입장도 표명하지 않은 것과 다름없다. 종전 70주년이 주는 무게감을 생각했을 때 정말 실망스럽기 그지없는 것이었다. 더욱이 후세대에게 사과라는 숙명을 안겨주기를 원치 않았다면 아베의 담화는 그 기대를 충족시키기에는 턱없이 모자라는 것이었다.

2015년 12월 28일 한일 외교장관회담의 협의는 사실상 이와 같은 아베 총리의 역사인식과 그 맥락을 같이 한다고 할 수 있다. 그와 같은 역사인식은 과거의 잘못에 대한 책임의 문제를 정면으로 받아들이기보다는 사실상 회피함으로써 당사자들의 이의제기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4. 과거사 인식과 책임의 문제

오늘 한일 양국간, 뿐만 아니라 동아시아에서의 갈등을 야기하는 근본원인으로서 과거사 문제는 포괄적으로 말하면 일본 제국주의 국가의 식민지 지배와 전쟁으로 인한 문제들이다. 그 문제들은 일차적으로 1945년 도쿄재판을 통해서, 그리고 1952년 샌프란시스코조약을 통해서, 그리고 한일 양국간에는 1965년 국교정상화 과정 등을 통해서 해결되었어야 했지만, 충분하고도 완전하게 해결이 이루어지지 못한 탓에 오늘날까지 갈등을 야기하는 원인으로 잠복해 있다.

물론 일본에서는 그 문제들은 이미 다 해결되었는데 한국과 중국 등에서 집요하게 문제 삼고 있기에 문제가 될 뿐이라는 인식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 예컨대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1990년대 이래 가장 뜨거운 문제로 부상되어 왔다. 이에 대해 일본의 입장에서는 양국간의 청구권 문제가 해결됨으로써 종료되었다고 보는 반면 한국에서는 국가간의 청구권 해결로 개인의 청구권이 소멸되지 않는다는 의견이 헌법재판소의 판결로 제기되기까지 하였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지난 2015년 12월 28일 열린 한일 외교장관회담에서 ‘최종적·불가역적’ 해결을 애써 강조한 것은 역설적으로 그 문제가 결코 쉽게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오히려 강변해주고 있다.

또한 독도 영유권 문제 역시 미해결의 상태이다. 그 밖에 중국과의 관계에서 난징학살, 731부대의 인체실험 등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고 역시 영토문제가 야기되고 있다. 과거사에서 비롯되는 문제의 사안들은 앞으로 줄어들기보다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많다. 예컨대 재일 한국인의 지위 문제는 지속되어 왔거나와 사활린 한인 문제, 한국인 피폭자 문제 등도 그 해결이 종료되었다고 할 수 없다.

게다가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확보와 헌법 개정, 그리고 안보법제의 제정 문제 역시 현재

宏) 외/이규수 옮김, 『기억과 망각 - 독일과 일본 그 두 개의 전후』(서울: 삼인, 2000); 다카하시 데스야(高橋哲哉)/김성혜 옮김, 『역사/수정주의』(서울: 푸른언덕, 2015); 이로카와 다이키치(色川大吉)/박진우 옮김, 『메이지의 문화』(서울: 삼천리, 2015) 등 참조할 것.

일본 자국 내의 문제로 한정되지 않고, 과거사 문제가 청산되지 않은 동아시아에서 폭발력을 지닌 사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과거 식민지 지배와 전쟁으로 인해 야기된 이런 문제들에 대해 어떤 대처가 가능할까?

1) 카를 야스퍼스가 제기한 전후 책임의 문제

일찍이 독일의 철학자 카를 야스퍼스는 독일의 전후 책임과 관련하여 ‘죄의 문제’에 대해 논하였다. 애초 뉘른베르크(Nuremberg) 재판이 열릴 무렵 강연했던 것으로 나중에 책으로 출간되었고,¹⁰⁾ 독일의 전쟁 책임에 대한 처리방법을 규정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여기서 야스퍼스는 죄를 네 가지로 구분하고 있는데, 법적 죄, 정치적 죄, 도덕적 죄, 그리고 형이상학적 죄가 그것이다.

법적 죄란 형사상의 명백한 범죄를 뜻한다. 야스퍼스는 그 적용을 단지 국내의 실정법 위반에 한정하는 견해를 반박하고 자연법과 국제법, 그리고 인권을 침해한 경우로 보았다. 그에 따라 뉘른베르크 재판의 법적 근거로서 국제군사재판소의 설치헌장이 제시한 평화에 반한 죄, 전쟁범죄, 인도(人道)에 반(反)한 죄의 정당성을 옹호했다.

정치적 죄란 자신이 속한 국가와 공직자의 잘못에 대한 시민의 책임을 뜻한다. 이것은 그야말로 ‘국민’ 일반과 관계된 책임으로서 자신을 지배하는 국가에 대하여, 자신이 지배를 당하고 있는 방식에 대하여 정치적 책임을 지는 차원이다. 국가의 특정한 체제를 지지한 경우뿐 아니라 그에 대해 저항했다 하더라도 그 체제가 빚어낸 과오를 막아내지 못했다면 정치적 책임이 면제되지 않는다. 독일 국민은 나치의 파시즘을 등장하게 한 책임을 지고 있다는 이야기이다.

도덕적 죄란 법적으로 무죄이지만 도덕적으로 책임이 있는 경우를 뜻한다. 이것은 때때로 그 경계가 모호할 수도 있지만, 작위든 부작위든 법적인 범죄 행위를 방조하는 경우라고 할 수 있다. 예컨대 자신이 다른 사람을 구할 수 있었는데 구하지 않았다든가, 반대해야 할 때 반대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 이것은 법적인 책임은 면해질 수 있지만, 법적인 죄와 정치적인 죄를 빚어내는 온상에 해당한다.

형이상학적 죄란 인간 상호간의 연대를 이루지 못한 책임을 뜻하는 것이다. 이것은 수용소 생존자의 죄책감을 통해 이해할 수 있는 것으로, 그야말로 속수무책과 무력감 속에서도 피할 수 없는 죄책감 같은 것이다. 야스퍼스에 의하면, 이것은 인간의 가장 근원적인 죄에 해당한다.

야스퍼스는 “독일인의 죄를 회피하는 도구로서 원죄 문제를 이용해서는 안 된다.”¹¹⁾고 밝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형이상학적 죄를 말하는 대목에서는 모호함을 보여주고 있으며 웬지 전통적 그리스도교의 원죄론을 떠올리게 한다. 그래서 가라타니 고진(柄谷行人)은 야스퍼스가 말하는 ‘형이상학적’이라는 말이 결국 “실은 죄가 없는데도 기꺼이 그 죄를 느끼고 받아들이는 고매함”을 뜻하는 것이며, 여기에서 독일 국민의 궁지와 사명을 되찾으려 한 것은 아닌지 반문하며 이를 비판적으로 꼬집는다.¹²⁾ 가라타니 고진의 지적과 더불어 야스퍼스가 죄의 문제에 대해 접근하면서 각 개인의 내면적 성찰의 측면을 일방적으로 강조하는 경향 또한 지적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스퍼스의 죄의 문제에 대한 제기는 전후 독일이 회피해서는 안 될

10) 카를 야스퍼스(Karl Jaspers)/이재승 옮김, 『죄의 문제 - 시민의 정치적 책임』(서울: 앤피, 2014).

11) 카를 야스퍼스, op.cit., 183.

12) 가라타니 고진(柄谷行人)/송태욱 옮김, 『윤리 21』(서울: 사회평론, 2001), 139.

책임의 문제를 부각시켰고, 독일의 과거사 청산과정에서 중대한 정치적 효과를 가져 왔다는 점을 부인할 수 없다.¹³⁾ 무엇보다 죄와 책임의 여러 차원을 구별하고 자각하게 한 것은 중요한 의의를 지닌 것으로 보인다.¹⁴⁾

2) 인도에 반하는 죄와 피해의 회복

특별히 야스페스도 주목한 ‘인도(人道)에 반(反)하는 죄’의 개념은 전쟁중 일어난 국제법 위반의 범위를 넘어 점차 식민지 지배 그 자체의 책임을 물을 수 있을 뿐 아니라 권력의 통치행위에서 비롯되는 여러 폭력에 대해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근거로 인식되었다.¹⁵⁾ 그에 따라 국제사회에서는 1948년 국제사회에서는 ‘제노사이드(Genocide) 조약’이 맺어졌고, 1998년에는 국제형사재판소가 설치되기에 이르렀다. 이 재판소의 규정은 강제실종, 아파르트헤이트(Apartheid) 등과 함께 강간, 성노예 등 성범죄 등을 인도에 반한 죄로 명시하고 있는데, 이는 식민지 책임론과 ‘위안부’ 문제 등과 깊은 관련을 맺고 있다. 인도에 반한 죄에 대한 인식은 점점 심화되는 가운데 이를 둘러싼 국제적 협의가 진척되고 있을 뿐 아니라 여러 나라에서 구체적인 사안들에 대한 책임의 문제가 계속 불거지고 있다. 가라타니 고진은 그런 맥락에서 미국의 원폭투하에 대한 책임을 묻는 시대도 다가올 것이라 전망하고 있다.¹⁶⁾

또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국가에 대한 시민의 정치적 책임의 문제이다. 어떤 정체(政體)를 선택하느냐 하는 것은 각 국민의 자결권으로 인정되는 바이지만, 특정한 체제가 자국 내에서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뿐 아니라 나아가 다른 나라들에게도 피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면, 각국 시민의 정치적 자결권은 엄중한 책임의 문제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¹⁷⁾

오늘날 이상과 같은 책임의 문제는 단지 일국 내의 문제이거나 또는 특정한 국가간의 문제일 수 없다. 그것은 인류사 전반의 문제일 수밖에 없다. 어떤 지역에서든 국가적 통치행위가 인도에 반하는 범죄를 야기하거나 그것을 정당화 또는 은폐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은 인류 전체의 문명사적 요구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국가적 범죄행위만 문제되는 것은 아니다. 그 누구에 의해 저질러졌든 인도에 반하는 범죄행위는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이 점에서 한일 양국간의 갈등을 일으키는 과거사 문제는 단지 한일 양국간의 문제가 아니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양국간의 외교적 타협으로 종결될 수 없는 것은 이러한 맥락에서이다. 잘못된 과거사에 대한 인식과 청산의 과정은 동아시아적 차원에서 뿐 아니라 세계사적 차원에서 보편적 의의를 지니는 것이다.¹⁸⁾

13) 가라타니 고진에 의하면, 일본에서도 다나베 하지메(田辺元)와 같은 철학자가 야스페스와 마찬가지의 입장을 취했다고 본다. 그의 『懺悔道としての哲学』(다나베 하지메/김승철 옮김, 『懺悔道의 철학』(서울: 동연, 2016)은 그러한 입장을 대변해주는 책인데, 야스페스와 마찬가지로 다나베 하지메 역시 파시즘의 ‘원인’을 묻지 않았기에 ‘인식’이 없었다고 평가한다. 가라타니 고진, op.cit., 142. 두 철학자의 주장의 유사성을 주목하고 그 한계를 지적하는 것도 의미 있지만, 그 동일한 주장이 각기 독일과 일본에서 어떤 정치적 효과를 발생시켰는지 검토하는 것도 필요할 것이다.

14) 야스페스에게서 ‘죄’와 ‘책임’의 차원은 명확하게 구별되지 않은 채 혼용되고 있다. 그러나 다카하시 테스야는 양자의 관계를 구별하여, “전후세대인 일본 국민은 침략전쟁에 참가하지 않았기 때문에 직접적인 전쟁책임이 있거나 ‘죄’를 지지는 않지만, 전후 일본 국가에게 ‘전후책임’을 완수하게 만들 정치적 책임이 있다”고 말한다. 다카하시 테스야, op.cit., 25. 야스페스가 전쟁의 책임이 있는 세대가 살아 있던 당대에 주장을 펼친 까닭에 양자의 의미를 구별하지 않았지만, 전후 세대가 등장한 오늘의 시점에서 양자의 의미를 구별해 생각하는 것은 전후책임의 문제를 제기하는 데 매우 유용한 것으로 보인다.

15) 전쟁과 여성대상폭력에 반대하는 연구행동센터(「戦争と女性への暴力」リサーチアクションセンター) 염음/한국 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번역기획/김경원 외 옮김, 『그들은 왜 일본군 ‘위안부’를 공격하는가』(서울: 휴머니스트, 2014), 245 이하 참조.

16) 가라타니 고진, op.cit., 179.

17) 일본에서 여러 논자들이 이야기하듯이 천황제와 ‘무책임의 구조’의 관련성도 진지하게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인도에 반하는 범죄의 문제가 인류 보편사적 차원에서 다뤄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각국의 내셔널리즘에 기반하여 국가간의 이해관계의 문제로 환원되고,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관한 한일 외교장관 회담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단지 국가간 외교적 타협의 대상이 되고 있는 현실에서 어떤 원칙을 견지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일까?

이와 관련하여 1993년 국제연합의 차별방지·소수자보호 소위원회의 특별 보고서, 곧 <인권과 기본적 자유의 중대한 침해를 당한 피해자의 원상회복과 배상 및 간생을 요구하는 권리에 대한 연구>는 중요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한다. 이 보고서는 일반 원칙으로 “인권과 기본적인 자유를 존중하고, 이와 관련하여 국제법상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모든 국가가 피해 회복의 의무를 진다는 것”, “피해 회복은 피해의 결과를 가능한 한 제거하고 교정하거나 침해를 방지, 저지함으로써 피해자의 고통을 구제하고 정의를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한다. 또한 “피해 회복은 피해자의 필요와 요망에 부응해야 하며 원상회복과 배상, 간생, 만족, 재발방지의 보증”이 필요하며 “국제법상 범죄에 해당하는 모든 인권 침해에 대한 피해회복의 내용에는 위반자를 소추하고 처벌하는 의무를 포함한다.”고 명시하고 있다.¹⁹⁾ 요컨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는 인권 존중에 근거한 정의의 확립을 그 요체로 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사실 지난 2000년 12월 8일부터 12일까지 일본 도쿄에서 개최된 ‘일본군 성노예제를 심판하는 여성국제전범법정’은 국제법적 판단 기준에서 가해자의 책임을 명백히 하고 피해자의 치유와 회복을 위한 판결을 내렸다. ‘여성국제전범법정’이 비록 민간 법정의 형태를 취하여 그 판결이 강제적인 구속력을 가질 수는 없었지만 국제적 차원에서 인도에 반하는 죄의 문제를 분명히 부각시키고 그 보편적 적용 가능성은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를 지니고 있다.²⁰⁾

인도에 반하는 죄의 당사자에 대해 책임을 추궁하고 그 피해자를 회복하게 하는 것이 국가적 책임으로 요구되는 상황 가운데서도 책임의 이행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면, 결국 국가 자체의 변화를 시도할 수밖에 없다. 여기서 시민의 정치적 책임이 중요한 과제로 등장한다. 시민의 정치적 책임은 피해 당사자의 고통이 엄연히 존재하는 상황에서 그 고통을 제거하고 원상회복하고자 하는 요구를 요체로 하는 것이며, 그 요구의 관철은 결국 국가의 정치체제 자체의 민주화를 통해서 가능하게 될 것이다. 그 시민의 정치적 행동은 오늘날과 같이 얹혀 있는 국제관계 속에서 국제적 연대를 통해 더욱 효과적으로 달성될 수 있다는 것은 두 말할 나위 없다. 한국과 일본 사이에서는 그 국제적 연대에서 소중한 경험을 축적해 왔고, 그 연대는 오늘도 지속되고 있다. 그 연대를 더욱 심화하고 확대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5. 정의의 확립과 피해의 회복을 위한 그리스도인의 과제

18)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아파르트헤이트 청산과 관련하여 진실화해위원회의 활동은 널리 알려졌으나, 한국에서도 민주정부 시절 진실과화해위원회가 설치되어 과거 국가권력에 의해 야기된 폭력에 대해 그 진실을 규명하고 원상회복을 돋는 활동을 펼쳤다. 예컨대 제주 4.3 희생자에 대해 대통령(당시 노무현 대통령)이 직접 사과를 표명하고, 4.3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한 것도 그러한 맥락에서 이뤄졌다. 한편 한국의 시민사회에서는 베트남전쟁 중 한국군에 의한 민간인학살 등에 대해 책임져야 한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으며, 진상규명과 진정한 화해를 위한 활동이 계속 펼쳐지고 있다.

19) 전쟁과 여성대상폭력에 반대하는 연구행동센터, op.cit., 171 참조.

20) 다카하시 데스야, op.cit., 119-131 참조.

과거에 일어났을 뿐 아니라 오늘에도 여전히 진행되고 있는 구체적인 범죄의 요체를 제대로 인식하고, 나아가 인권과 정의에 기반한 정치체제 형성을 통해 그에 대해 정당하게 책임을 지려는 태도는, 그리스도교 신학의 입장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앞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죄와 책임의 여러 차원을 주목하면서도 그 가운데서 특별히 명백한 범죄행위와 정치적 책임의 문제에 초점을 맞췄다. 이른바 도덕적 죄의 문제, 그리고 앤스퍼스가 형이상학적 죄라고 일컬었던 인간의 근원적 죄의 문제가 현실적으로 의미 없기 때문이 아니다. 그리스도교 신학에서는 사실상 그 두 가지 죄의 차원이 본질적인 것으로 간주되어 왔다. 그러나 그것은 오용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인간은 예외 없이 죄인이기에 인간사회 안에서 벌어지는 일들에 대해 서로 잘잘못의 책임을 묻는 것이 무용하다는 논리를 정당화하는 근거로 활용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마치 전후 일본에서 등장한 ‘일억총참회(一億總懺悔)론’²¹⁾과 같이 오용되어 왔다. 그러나 가라타니 고진이 적절하게 지적하고 있는 것처럼 인간의 근원적인 죄에 대한 인식은 “사람들이 자기에게는 죄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을 의심하도록 만들기 위해,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만 필요”한 것이지,²²⁾ 그것이 역사적·상대적 현실에서 명백한 범죄와 책임의 문제를 덮어버리는 구실이 될 수는 없다.

성서가 일관되게 강조하는 ‘정의’의 관점에서 우리는 역사적 범죄와 책임의 문제에 새삼 접근할 필요가 있다. 성서가 강조하는 정의의 요체는 기본적으로 하느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의 온전함을 이룸과 동시에 그것의 구체적 표현으로서 인간관계 그 자체의 온전함을 이루는 데 있다. 여기서 인간관계의 온전함은 사회적으로 가장 연약한 처지에 있는 사람, 가장 절박하게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사람이 과연 삶을 보장받으며 존엄성을 지킬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²³⁾ 그것은 현대적 개념으로 인권과 정의의 요구에 상응한다. 그와 같은 성서적 정의의 개념은, 인간의 근원적 죄에 대한 인식을 결코 회피하지 않지만, 인간사회 안에서 인간 스스로 감당해야 할 책임의 과제를 환기시키고 있다.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그와 같은 정의의 관점에서 역사적 책임의 문제에 대처함으로써 고통을 겪는 당사자들의 고통이 해소되는 진정한 화해를 이뤄야 하는 과제를 부여받고 있다.

성서가 뒷받침해주고 있는 보편적 인권과 정의의 관점에서 볼 때,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비롯한 과거 제국주의 국가의 범죄행위에 대한 책임은 인간존엄과 정의의 원칙에서 다뤄져야 한다는 것이 분명하다. 그것은 한편으로加害자의 책임을 엄중하게 묻는 한편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동반하여야 한다. 그 조건이 충족되지 않는 한 ‘최종적·불가역적’ 해결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참고문헌

- 가라타니 고진(柄谷行人)/송태옥 옮김. 『윤리 21』. 서울: 사회평론, 2001.
다나베 하지메(田辺元)/김승철 옮김. 『懺悔道의 철학』. 서울: 동연, 2016.
다카하시 데스야(高橋哲哉)/김성혜 옮김. 『역사/수정주의』. 서울: 푸른언덕, 2015.

21) 1945년 8월 종전 직후 일본 총리 히가시쿠니노미야 나루히코(東久邇宮稔彦)가 폐전의 책임이 일본국민 전체에 있는 만큼 모두 참회해야 한다는 의미에서 한 말로서, 그것은 책임의 내용과 주체를 얼버무려버림으로써 전후 책임의 문제를 사실상 덮어버리는 논리로 통용되어 왔다.

22) 가라타니 고진, op.cit., 106.

23) 성서의 정의 개념에 대해서는 최형묵, 『한국 근대화에 대한 기독교윤리적 평가 – 산업화와 민주화의 모순관계에 주목하다』(서울: 한율, 2015), 106-110 참조할 것.

- 야스페스, 카를/이재승 옮김. 『죄의 문제 – 시민의 정치적 책임』. 서울: 앤피, 2014.
- 이로카와 다이키치(色川大吉)/박진우 옮김. 『메이지의 문화』. 서울: 삼천리, 2015.
- 전쟁과 여성대상폭력에반대하는연구행동센터(「戦争と女性への暴力」リサーチアクションセンター) 엮음/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번역기획/김정원 외 옮김. 『그들은 왜 일본군 ‘위안부’를 공격하는가』. 서울: 휴머니스트, 2014.
- 정재정. 『주제와 쟁점으로 읽는 한일관계사』. 서울: 역사비평사, 2014.
- 타나카 히로시(田中宏) 외/이규수 옮김. 『기억과 망각 – 독일과 일본 그 두 개의 전후』. 서울: 삼인, 2000.
- 최형묵. 『한국 근대화에 대한 기독교윤리적 평가 – 산업화와 민주화의 모순관계에 주목하다』. 서울: 한울, 2015.